

복집 사장이 조정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허위 보도는 맞는데, 법률적으로 정정보도 신청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 몇 년 전 위원회에 흥분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때는 바야흐로 여름, 올림픽의 계절이었다. 중앙 일간지에 올림픽 축구 8강에 대한 분석 보도가 나갔는데, 과거 올림픽 8강 국가를 소개하면서 한 나라를 틀리게 보도해버린 것이다. 이 남성은 어떻게 중앙 일간지가 이런 중차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느냐며, 정정보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해당 기사가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만을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로 보고 있는데, 이 남성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데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 드렸으나, 그럼에도 조정 신청을 하셨고, 결국 사건은 기각으로 끝났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만 하면 조정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앞의 남성이 축구 잡지 필진인데, 문제의 기사를 받고 잘못된 기사를 써서, 성난 축구팬들로부터 야유를 듣고, 결국 이 일로 잡지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 이 남성은 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상담 건이 있었다. 내가 복집 사장인데, 옆집 복집 주방장이 분명히 올 초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땀단다. 그런데 맞집 소개 방송에서 옆집 주방장이 15년 경력이라고 소개가 됐다는 거다. 옆집 주인은 가게 때문에 허위 방송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고, 그 이후 자기 가게 손님수가 많이 줄었다며, 해당 방송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거짓말한 옆집 주인이 알미운 마음도, 속이 터지는 울분도 이해가 됐다. 그러나 복집 사장도, (가상의) 축구 잡지 필진도 둘 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방송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피해를 입은 자'를 "보도에서 지명이 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명이 거론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보도된 경우에만 언론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조정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언론의 책임만큼이나 언론 자유의 보장도 중요하므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자 복집 사장은 아쉬움이 잔뜩 남은 목소리로 "피해를 입긴 입었는데, 법상으로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란 말이죠?"라고 말을 흐리며 전화를 끊는다.

조정 신청 당사자에 대해 안내를 하면, 허위의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그 보도로 인해 그릇된 정보를 믿게 되는 전체 국민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분들도 가끔 만난다. 법률상으로는 틀린 말인데, 묘하게 말문을 막아버리는 포스가 있는 말이다. 아마도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짓는 이성적인 머리보다 피해자를 넓게 인정하는 가슴과 사명감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가령 기자들이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오보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다면, 억울한 제2의 복집 사장이 덜 나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